

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6-24호

행정중심복합도시 1-1생활권 L10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

『주택법』 제15조 및 『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』 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-1생활권 L10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10월 31일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

1. 사업명 : 행정중심복합도시 1-1생활권 L10블록 주택건설사업

2. 사업주체

가. 사업주체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(주)원건설 대표 이경애

나. 주소 :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27

3. 사업개요

가. 대지위치 : 행정중심복합도시 1-1생활권 L10블록

나. 사업면적 : 34,099㎡(기부채납 314.26㎡ 포함)

다. 대지면적 : 33,784.74㎡

라. 연면적 : 76,572.0519㎡ (용적률 : 139.99 %)

마. 건축면적 : 7,820.9879㎡ (건폐율 : 22.94 %)

바. 사업규모 : 아파트 8동(345세대, 지하2층~17층) 및 부대·복리시설

- 전용면적 107.1433㎡ 203세대 (107A형)      - 전용면적 107.1433㎡ 17세대 (107A-1형)
- 전용면적 107.6953㎡ 6세대 (107B형)        - 전용면적 111.3059㎡ 31세대 (111A형)
- 전용면적 111.3059㎡ 3세대 (111A-1형)      - 전용면적 111.3013㎡ 20세대 (111B형)
- 전용면적 113.1897㎡ 32세대 (113A형)      - 전용면적 113.1897㎡ 6세대 (113A-1형)
- 전용면적 115.3175㎡ 6세대 (115형)        - 전용면적 122.7516㎡ 8세대 (122형)
- 전용면적 199.4336㎡ 6세대 (199형)        - 전용면적 202.1397㎡ 7세대 (202형)

사. 구조 :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

아. 사업비 : 152,912,253천원

4. 사업기간 : '16. 11. ~ '18. 12.

5. 기타 :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,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

●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-22호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,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「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6-15호, 2015.8.26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16년 10월 31일

국립환경과학원장

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

「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별표 4 가목(유독물질)의 고유번호 “2014-1-730”란 다음에 “2014-1-731”란부터 “2016-1-743”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분류·표시 목록(제13조제1항 관련)

가. 유독물질

고유번호	화학물질의 명칭	CAS번호	유해성분류(Code)		표시사항(Code)*			M계수	UN No.
			항목	구분	그림문자	신호어	유해·위험문구		
2016-1-731	트리스(2,3,4,5,6-펜타플루오로페닐)보란[Tris(2,3,4,5,6-pentafluorophenyl)borane]	1109-15-5	급성독성-경구(3.1) 피부부식성/자극성(3.2) 심한눈손상/눈자극성(3.3) 수생환경유해성-급성(4.1)	3 2 1 1	GHS05 GHS06 GHS09	위험	H301 H315 H318 H400	-	-
2016-1-732	2,3,5,6-테트라플루오로벤질트랜스-2-(2,2-디클로로비닐)-3,3-디메틸사이클로프로판카르복실레이트[2,3,5,6-Tetrafluorobenzyl trans-2-(2,2-dichlorovinyl)-3,3-dimethylcyclopropane carboxylate]	118712-89-3	수생환경유해성-급성(4.1) 수생환경유해성-만성(4.1)	1 1	GHS09	경고	H400 H410	1,000	-
2016-1-733	2-도데세날[2-Dodecenal]	4826-62-4	수생환경유해성-급성(4.1) 수생환경유해성-만성(4.1)	1 1	GHS09	경고	H400 H410	-	-
2016-1-734	트리플루오로트리스(1,1,2,2,2-펜타플루오로에틸)인산[4-(1-메틸에틸)페닐][4-메틸페닐]이오도늄트라이플루오로에틸포스페이트(1-) (1:1)	1245634-39-2	급성독성-경구(3.1)	3	GHS06	위험	H301	-	-
2016-1-735	4-(2-메틸프로필)사이클로헥산프로판알[4-(2-Methylpropyl)cyclohexanepropanal]	1254940-85-6	피부과민성(3.4) 수생환경유해성-급성(4.1) 수생환경유해성-만성(4.1)	1 1 1	GHS07 GHS09	경고	H317 H400 H410	-	-

고유 번호	화학물질의 명칭	CAS번호	유해성분류(Code)		표시사항(Code)*			M계수	UN No.
			항목	구분	그림문자	신호 어	유해·위험 문구		
2016-1-736	6,6a,7,8,9,9a-헥사히드로-7,7,8,9,9-펜타메틸-5H-사이클로펜타[h]퀴나졸린[6,6a,7,8,9,9a-Hexahydro-7,7,8,9,9-pentamethyl-5H-cyclopenta[h]quinazoline]	1392325-86-8	급성독성-경구(3.1) 피부부식성/자극성(3.2) 피부과민성(3.4) 수생환경유해성-급성(4.1) 수생환경유해성-만성(4.1)	4 2 1 1 1	GHS07 GHS09	경고	H302 H315 H317 H400 H410	-	-
2016-1-737	6,7,8,9-테트라히드로-7,7,8,9,9-펜타메틸-5H-사이클로펜타[h]퀴나졸린[6,7,8,9-Tetrahydro-7,7,8,9,9-pentamethyl-5H-cyclopenta[h]quinazoline]	1315251-11-6	급성독성-경구(3.1) 피부과민성(3.4) 수생환경유해성-급성(4.1) 수생환경유해성-만성(4.1)	4 1 1 1	GHS07 GHS09	경고	H302 H317 H400 H410	-	-
2016-1-738	N3-(에틸카본이미도일)-N1,N1-디메틸-1,3-프로판디아민의 염산염 (1:1)[N3-(Ethylcarbamimidoyl)-N1,N1-dimethyl-1,3-propanediamine, hydrochloride (1:1)]	25952-53-8	급성독성-경구(3.1) 피부부식성/자극성(3.2) 피부과민성(3.4) 수생환경유해성-만성(4.1)	3 1 1 3	GHS05 GHS06	위험	H301 H314 H317 H412	-	-
2016-1-739	N1-(3-아미노프로필)-N1-도데실-1,3-프로판디아민[N1-(3-Aminopropyl)-N1-dodecyl-1,3-propanediamine]	2372-82-9	급성독성-경구(3.1) 피부부식성/자극성(3.2) 수생환경유해성-급성(4.1) 수생환경유해성-만성(4.1)	3 1 1 1	GHS05 GHS06 GHS09	위험	H301 H314 H400 H410	-	-
2016-1-740	(1R,4aS,10aR)-1,2,3,4,4a,9,10,10a-옥타히드로-1,4a-디메틸-7-(1-메틸에틸)-1-페난트렌메탄아민, 브롬산염 (1:1)[(1R,4aS,10aR)-1,2,3,4,4a,9,10,10a-Octahydro-1,4a-dimethyl-7-(1-methylethyl)-1-phenanthrenemethanamine, hydrobromide (1:1)]	40043-73-0	피부부식성/자극성(3.2) 수생환경유해성-급성(4.1) 수생환경유해성-만성(4.1)	2 1 1	GHS07 GHS09	경고	H315 H400 H410	-	-

고유번호	화학물질의 명칭	CAS번호	유해성분류(Code)		표시사항(Code)*			M계수	UN No.
			항목	구분	그림문자	신호어	유해·위험문구		
2016-1-741	트리페닐술포늄과 1-[(3-히드록시트리시클로[3.3.1.1 <sup>3,7</sup> ]데실)메틸] 2,2-디플루오로-2-설포아세테이트(1:1)의 염[Triphenylsulfonium salt with 1-[(3-hydroxytricyclo[3.3.1.1 <sup>3,7</sup> ]dec-1-yl)methyl] 2,2-difluoro-2-sulfoacetate (1:1)]	912290-04-1	급성독성-경구(3.1)	3	GHS06	위험	H301	-	-
2016-1-742	테트라히드로-1,3,4,6-테트라키스(2-메르캅토에틸)이미다조[4,5-d]이미다졸-2,5(1H,3H)-디온[Tetrahydro-1,3,4,6-tetrakis(2-mercaptoethyl)imidazo[4,5-d]imidazole-2,5(1H,3H)-dione]	1569262-17-4	급성독성-경구(3.1)	3	GHS06	위험	H301	-	-
2016-1-743	1-니트로나프탈렌[1-Nitronaphthalene]	86-57-7	급성독성-경구(3.1)	3	GHS06	위험	H301	-	-

비고

\* 예방조치문구는 [별표 1] “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”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 
부칙

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●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-23호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·고시합니다.

2016년 10월 31일

국립환경과학원장

폐기물분석전문기관 신규지정

기관명	주소	대표자	지정번호	지정분야
(주)청룡환경	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20 에이스테크노타워 5차 209호	윤정섭	제69호	PCBs

부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